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</u> <u>안전관리법에 의한</u> <u>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</u> <u>가이드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지정심사 가이드 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과 관 련하여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 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 “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 (이하 “규칙“이라 한다) 및 운용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 | <p>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</u> <u>안전관리법에 의한</u> <u>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</u> <u>가이드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지정심사 가이드 는 안전인증기관·안전확인시험 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(이하 “안전인증기관등“이라 한다.) 지정과 관련하여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16조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
및 재산을 보호하고,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

제14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
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
안전확인시험"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기관(이하 "안전확
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
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
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기
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여야 한다.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
지도·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

제11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) 법 제14조제2항에서
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
1.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(0
직·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, 해당 제품의 인
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
3.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
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
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·
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일차·사용계약 등을 처
다.
4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
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
5.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
성을 지닐 것
6.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
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도
있을 것

제18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
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
2.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
3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
4.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
5.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·감
6.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
7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
8.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
9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
10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
11.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
12.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
13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

제14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) ① 안전확인시험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한다.
②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2 또는 별 정한다.

제15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수수료) ① 안전인증기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
1. 지정 신청 수수료 : 50,000원
2. 심사수수료
가. 최초평가시 : 심사비용 × 2(명) × 3(일) [또는 나. 인정받은 품목범위 확대 시 : 심사비용 × 2(명) × 3(일)]
② 심사비용은 「벤치니머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제2항에 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·공표하는 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.
③ 평가 일수는 지정신청분류가 2분류를 기준으로 산정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) ① 국가기술표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(국가기술표준원

제17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의) ① 지정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, 그 중 심사반원으로 구성한다.
② 심사반 구성은 해당 분류의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사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.

1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, 공인시험기 (KAS)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
 2. 해당분야 경험이 15년 이상인 자
-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한 기준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의

제18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) ①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: 1. 기관명,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2. 소재지 변경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영 제11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가이드에 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

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, 영, 규칙 및 운용요령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.

1. “전기용품”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.

2. “안전인증대상제품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.

가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:
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·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:
구조·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

3. “안전인증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.

<삭 제>

4. “안전확인”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<삭 제>

5. “안전확인대상제품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.

<삭 제>

가.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: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·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:

구조·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

6. “안전확인시험기관”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<삭 제>

7. 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.

<삭 제>

가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: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·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

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
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
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
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
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
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
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
로 정하는 것

나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

활용품: 소비자가 취급·
사용·운반 등을 하는 과
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
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
거나 소비자가 성분·성능
·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
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
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
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
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
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
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
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
것

8. “모델”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
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
설계·기능 등이 서로 다른

<삭 제>

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.

9. “기본모델”이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 구분 및 규칙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(이하 “안전확인신고”라 한다)를 한 모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(이하 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”라 한다)를 한 모델을 말한다.

10. “파생모델”이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 구분 및 규칙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11. (생 략)

제3조(안전확인신고)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,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정심사 주무기관)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(전기용품),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(생활용품)에서 운영·관리한다.

제5조(지정분야 및 지정범위)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야 및 범위는 규칙 별표4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2 (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)에서 정한 제품분류별(군별), 품목별, 세부품

1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4조(지정심사 주무기관) 법 제4조, 법제14조, 법 제34조의 2-----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업무-----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-----
--.

제5조(지정분야 및 지정범위) 안전인증기관등 -----
--- 규칙 별표3 제1호 및 운용요령 별표 1 (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) 규칙 -----
---- 세부품목), 규칙 별표7의2

목별로 지정한다.

제6조(지정심사 규정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심사 및 지정에 적용하는 규정은 법, 영, 규칙, 운용요령 및 이 가이드에서 정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) <신설>

① (생략)

<신설>

② 시행령 제11조제3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·고가 시험설비”

및 운용요령 별표3의2 (안전성 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-----
-.

제6조(지정심사 규정) ① 안전인증기관등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기준)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“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”이란 시행령 제7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)을 말한다.
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“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”이란 시행령 제14조의2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)을 말한다.

④ ----- 제11조제3호에서,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-----

란 IECCE(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기기인증제도)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의무 보유장비(구분기호 'R') 이외의 장비를 말한다.

제9조(안전확인 시험기준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IEC 표준 간에 번역 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, IEC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.

제3장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
신청 및 접수

제10조(지정신청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9조(안전인증·안전확인시험 및 안전성검사 기준) ① 안전인증기관등----- 안전인증대상제품,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----- 안전인증,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---.

② 안전인증기관등 -----

-----.

제3장 안전기관등 지정 신청
및 접수

제10조(지정신청) ① 안전인증기관등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지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11호 서식, 별지 제22호 서식 및 첨부서류)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

<삭 제>

2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, 인력, 시험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 계획서 1부

<삭 제>

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

<삭 제>

4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<삭 제>

5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

<삭 제>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
외 인원은 심사원으로 구성한
다.

② (생 략)

제13조(심사반의 주요임무) ① 심
사반장과 심사원은 신청기관이
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심사기간
동안의 현장평가 등 심사업무
전체를 주관하고 아래의 임무를
수행한다.

1. 심사반장 : 다음의 각 호의
활동을 한다.

-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기
관이 제출한 문서검토 및 확
인

2. (생 략)

제14조(심사일수) 안전확인시험기
관의 지정심사와 관련한 심사일
수는 아래와 같다.

1. (생 략)

2. 다만, 연장 또는 추가심사가
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
준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
장하여 심사한다. 이때에는 안
전확인시험기관 신청기관에
통보를 하여야 한다.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심사반의 주요임무) ① --

-----.

1. -----
-----.

- . 안전인증기관등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심사일수) 안전인증기관등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 안
전인증기관등 -----

3. (생략)

제15조(심사계획 통보)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심사계획서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자 측 확인사항

제16조(심사반의 심사절차) 심사반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실시한다.

1.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(제품분류별 / 품목별/ 세부범위별)

2. ~ 4. (생략)

제18조(지정 등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품분야의 세부품목 분류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심사계획 통보) -----

----- 안전인증기관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안전인증기관 -----

제16조(심사반의 심사절차) -----

-----.

1. 안전인증기관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지정 등) ① -----

안전인증대상제품,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--- 안전인증,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성검사를 -----
----- 안전인증기

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
2.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소재지
3. 4. (생략)

③ 제1항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전체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완·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투명성,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자체 보완·시정 후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
제19조(기록유지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기록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관련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관등-----.

② ----- 안전인증기관등을 ----- 안전인증기관등 -----
-----.

1. 안전인증기관등-----
2. 안전인증기관등-----
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안전인증기관등 -----

-----.

제19조(기록유지) ① ----- 안전인증기관등 -----

-----.

1. ~ 3. (생략)
4.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현황 및 지정범위, 지정일자
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이 수여된 기관의 일반현황, 지정 수여일자, 지정범위 등이 수록된 안전확인시험기관 명부(directory)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(지도감독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) 제5항에 의거 지도 감독할 수 있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안전인증기관등-----
5. (현행과 같음)

6.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, 법 제34조의9(배상책임)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
7.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,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결함 등으로 인한 판매중지 등(리콜) 여부

② -----

-- 안전인증기관등 -----

--.

제20조(지도감독) ① -----
----- 안전인증기관등으로 -
----- 안전관리법 제4조(안전인증기관-----
----- 제5항, 제14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) 제5항, 제34조의2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) 제4항---

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감독 시, 심사반을 구성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지도감독 시 심사반은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발행된 시험성적서의 적절성

2. 시험장비 및 설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

3. 4. (생략)

<신설>

④ 심사반은 지도감독 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별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치명결함 (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서 문제가 심각할 경우)

⑤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본 가이드의 제20조~제24

② -----
----- 안전인증기관등-----
-----.

③ -----
-- 안전인증기관등-----

-----.

1. 발행된 시험(또는 검사) 결과서의 적절성

2. 시험(또는 검사)장비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5. 법 제34조의9(배상책임)에 의거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 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(안전인정기관등)-----

<삭제>

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제22조의 경우 법 제12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), 시행규칙 제22조(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) 및 [별표 11]에 의거 해당기관을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다.

제21조(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)

① 치명결함의 종류는 시행규칙 [별표11] 및 [별표12]와 같다.

② (생략)

제22조(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결함, 치명결함이 발생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), 시행규칙 제39조(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) 및 [별표 12]에 의거 해당기관을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다.

제21조(치명결함의 종류 및 조치)

① -----
-----별표12], [별표12의 2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) ① -----
----- 안전인증기관등에 -----
----- 안전관리법 제12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), 시행규칙 제22조(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) 및 [별표11], 제21조(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---별표 12], 법 제34조의 6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), 시행규칙 제55조의9(안전성검

② 지정취소 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인정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반납하고, 회사의 광고 등을 위한 선전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표기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(지정기관의 변경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지정된 이후 지정범위 등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4조(공무원 의제 및 의무)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게 청렴의무

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) 및 [별표 12의 2]---.

② ----- 안전인증기관등-----

-----.

제23조(지정기관의 변경) ① 안전인증기관등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공무원 의제 및 의무) ① 안전인증기관등-----

-----.

② ----- 안전인증기관등-----

를 부여한다.

-----.